

시설공사 및 기타 계약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3. 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 및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계약”이란 본교에서 행하는 각종 시설공사 또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기타 단가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 또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기타 단가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담당부서) 계약업무는 총무지원실에서 담당한다.

제5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방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7조(입찰공고) 입찰공고는 일간신문 게재, 지명업체에 통보, 지정게시판 게시, 전산통신망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8조(입찰공고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공사입찰의 경우는 현장설명의 장소, 일시, 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5. 낙찰자 결정방법(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6.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 비용
9.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정가격은 제세공과금 및 각종 수수료 등 제경비 일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종류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11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입찰
2.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에 입찰자가 참가하지 아니한 입찰
5. 입찰공고나 입찰유의사항을 위반한 자의 입찰
6. 입찰참가자 중 담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낙찰자 결정) 낙찰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세입이 원인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
2. 세출이 원인이 되는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동일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대상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3조(계약서 작성) 각종 시설공사 또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기타 단가계약은 계약서의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실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사 및 기타 계약에 있어서 특수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6.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기타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서, 각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보증금 납부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어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상기 제10조 제2항에 정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및 검사) 감독자(시설지원실 또는 재무지원실 담당자)는 감독·검사의 결과 및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상이할 경우,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총무지원실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해지) 계약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그 금액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하자보수 및 보증금) ① 시설공사 또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기타 단가계약은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하며,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공사 및 기타 계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내로 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1일에 대하여 제2항에 정한율의 지체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지체상금율은 공사의 경우 1000분의 1,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의 경우 1000분의 2.5로 한다.

제19조(수의계약) 제6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부칠 이유가 없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3.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
5.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또는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의 경우
7.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에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8. 특정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9. 이미 구입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로써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10. 2억원 이하의 공사와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11. 동·식물이나 조경수목, 조경석 등 생산자와 직접 구매하는 경우
12. 물품의 가공, 하역, 운송, 보관, 통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대행을 하는 경우
13. 사회복지법인이나 각 분야별 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4. 공사 및 기타 계약에 있어서 특수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15.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기타 단가계약)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로 및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견적서 제출요구) ①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과 100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그 밖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

3-1-7-4 시설공사및기타계약에관한규정

예규·통첩, 고시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